

2023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긴급) 지원 공고

- ✓ 현대오일뱅크와 (재)한국에너지재단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발생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한국에너지재단(www.koref.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최근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유를 지원해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 ESG 경영을 고려한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

□ 대상 기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시설) / 전국(충남 제외)*	취약계층(가구)* / 전국(충남 제외)*
지원금액	개소당 200만 원(상품권)	가구당 30만 원(상품권)
신청주체	사회복지 시설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규모 등 제한 없음)
지원개소	2,000개소	10,650가구
대상 기준	① 난방 연료 : 등유 사용 ② 이용자 수 - 생활시설(입소정원 50인 이하) - 이용시설(상근종사자 10인 이하) ③ 시설 조건 - 3~6가구 대상자 추천 - 직접 복지서비스 수행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 미신고 시설, 간접 수행 제외	① 난방 연료 : 등유 사용 ② 가구 조건 - 차상위계층(증명서) - 중위소득 50~60%(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③ 중복수급 불가 - 에너지 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23년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제외
	※ 분야별 위 기준 모두 충족 시 추천 가능(분야별 ②은 한 개조건 해당 가능)	

* (가구)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하며 추천기관 경유 접수, 개별 가구 대상자에게 상품권 배포 금지

* 충청남도는 현대오일뱅크 별도 예산으로 자체 사업 시행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46,735	43,302	19,049	-
2인	2,073,693	72,658	65,318	73,199
3인	2,660,890	93,530	91,571	94,712
4인	3,240,578	113,355	118,729	115,641
5인	3,798,413	134,608	148,264	136,865
6인	4,336,789	154,888	170,489	157,869

* (1인 가구) 중위소득 120%의 반액으로 추산 기재

2 접수 관련

□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2. 21.(화) ~ 3. 8.(수)
- 접수 방법 : 메일 접수(신청서, 증빙 등 첨부파일 필수)
 - * E-mail : sg1@koref.or.kr / 담당자 : 02-6913-2132, 2145, 2147
- 접수 구분
 - (시설) 지원사업 신청 복지시설 추천 가구(3~6개) 포함 접수
 - (가구) 전국 지자체*, 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가구(3~6개)
 - * (지자체) 위로는 광역, 아래로는 기초지자체까지 개별로 신청 가능
ex)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당 6가구 가능, 지자체 발굴 후 신청시설 배분 가능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메일 접수 (sg1@koref.or.kr)
사회복지 시설	- 지원 신청서(시설) 1부
	- 시설신고증, 시설 고유(사업자)등록증 각 1부
취약계층 가구	- 지원 신청서(가구)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중위소득 50~60%)
*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진행 일정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대상자 추천 및 접수	2023. 2. 21.~3. 8.	- 지자체, 복지시설, 유관기관에서 발굴 및 추천 - 신청 접수(전자우편 접수)
대상 심사 및 선정	3. 9.~3. 23.	- 대상자 선정 적격 심사
대상자 발표	3. 24.	- 시설 2,000개소, 가구 10,500가구 선정 - 홈페이지 게재, 담당자 문자 통지
난방비 지원 상품권 지급 및 수령 확인	3. 27.~4. 30.	- 주유 상품권 유가증권 발송 - 수령 확인 및 인수확인증 회신 - 부정 수급 방지 및 준수사항 안내 -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공지
결과 보고 취합	~2023. 6. 30.	-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용 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점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 사항

- 가구는 추천기관* 경유 접수, 추천기관당 3~6가구 신청
* (추천기관) 선정 후 유류 지급·결과보고서 작성 등 수행(가구에 상품권 지급 X)
- 사랑의 난방유 지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에서 지원함
-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등유 구매 어려울 시 지원 불가
* (지원 유무) 주유소 또는 자체 배달로 주유 가능해야 지원
- 유사 사업*의 수혜 대상이거나 예정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유사 사업)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석탄 쿠폰, 민간 등유 지원 등

5 문의

- (재)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32, 2145, 2147

붙임1 주유소 검색 안내

<https://www.opinet.co.kr> 접속 후
“산 주유소 찾기” → “지역별”을 클릭

지역 설정 후 상표는 “현대오일뱅크”만 체크
품목은 “실내등유”로 하여 주유소 확인

검색되는 주유소 위치 확인 후 전화하여
배달 가능, 등유 취급 여부를 확인

해당 지역에 없을 시 근처로 범위를 바꾸어
재검색 후 여부 확인
(근처에 없거나 배달 불가,
등유 미취급 시 지원 불가)

붙임2 신청서 작성 관련

□ 신청서 작성 관련

○ 복지시설

지원 신청서	주소	-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
	담당자명 휴대전화	- 작성 필수(신청발표 시 문자 발송 등) - 사업 진행 중, 담당자 변경 시 고지
	E-mail	- 한메일(hanmail.net, daum.net) 제외한 메일로 기재 및 발송 요청 * 수신 오류 발생으로 인한 접수 누락 시 지원 불가
	지원 경험	- 2023년 지원사업(사랑의 열매, 에너지 바꾸처 등)
	사용처	- 난방유 구매 예정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명” 기재 * 배달 가능,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요망 * 주유소 검색은 붙임1 참고 (https://www.opinet.co.kr)

○ 가구

지원 신청서 (기본사항)	주소	- 지원받을 가구 주소
	가족사항	-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 수 기재
	지원 여부	- 2023년 지원사업(사랑의 열매, 에너지 바꾸처 등)
지원 신청서 (추천기관)	주소	- 상품권 수령 가능 주소
	담당자명 휴대전화	- 작성 필수(신청발표 시 문자 발송 등) - 사업 진행 중, 담당자 변경 시 고지
	E-mail	- 한메일(hanmail.net, daum.net) 제외한 메일로 기재 및 발송 요청 * 수신 오류 발생으로 인한 접수 누락 시 지원 불가
	사용처	- 난방유 구매 예정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명” 기재 * 배달 가능, 등유 취급 여부 등을 지원 전 사전확인 요망 * 주유소 검색은 붙임1 참고 (https://www.opinet.co.kr)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요령	- 지원받을 가구 대상자 작성

붙임3 사회복지시설 범위 및 개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 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 법령

- 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⑯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 ⑳ 「다문화 가족 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㉖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㉗ 「청소년 복지지원법」 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 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상담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육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노년층에 지역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노년층주요의 보건의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시설 공공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치료시설 폭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지원관 청소년치문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 의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훈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정책과		
		○ 학대피해노인상담센터			
	이용	○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훈운영과		
		○ 여가 · 노인복지관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지원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상담소, 아동전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과		
	이용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구정책총괄과 아동학대대응과		
		○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장애인	생활	○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 장애인요양시설 ○ 직업재활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리활기반과
	이용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요양시설 ○ 직업재활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리활기반과
		○ 장애인요양시설 ○ 직업재활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리활기반과
영유아	이용	○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급식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치료시설 ○ 폭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 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